

2023년도 금천문화재단 출연 동의(안)

의안번호	2259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11. 10 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“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” 는 규정에 따라 2023년 회계연도 금천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연 대상 : 재단법인 금천문화재단

나. 출연 필요성

- 1) 금천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·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금천 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
- 2)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
- 3)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, 지역축제 등의 발굴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

▶ 출연에 대한 구의회 동의 후, 2023 회계연도 사업예산(안) 심의·의결

다. 2023년 예산액

- 1) 문화재단 총 예산액 : 금8,431,227천원
- 2) 출연금 요구액 : 금7,209,614천원

3. 참고사항

가. 과목별 편성내역, 지출예산총괄(부서별)

나. 관계법령

- 1)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- 2)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(재정지원)
- 3)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(운영재원)

<붙임1>

수입 예산 총괄표

(단위 : 천원)

과 목	2023년(안)	2022년	증감	증감률
총계	8,431,227	7,439,791	991,436	13%
사업예산	7,965,922	6,931,585	1,034,337	15%
영업수익	7,953,922	6,925,545	1,028,377	15%
출연금수입	7,209,614	6,702,238	507,376	8%
관리사업수입	40,422	17,807	22,615	127%
보조금수입	636,886	205,500	431,386	-
기부금수입	67,000	0	67,000	-
영업외수익	12,000	6,040	5,960	99%
자본예산	465,305	508,206	△42,901	△8%
유보자금	465,305	508,206	△42,901	△8%
순세계잉여금	465,305	508,206	△42,901	△8%

■ **관리사업수입(붙임 1 참조)**

- 금나래아트홀 공연 관람료 및 대관 수입
- 구립도서관 임대 수입 등

※ 코로나19 완화로 인하여 문화예술시설 정상화로 관리사업수입 증가 추계

■ **예산총계주의에 의거하여 2023년에 보조금수입과 기부금 수입 반영**

(회계연도 중 보조금 및 기부금 사업비가 예산을 초과하거나 감소할 경우,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)

■ **2021년 순세계잉여금 465,305천원 수입예산 반영**

<붙임2>

지출 예산 총괄표(팀별-사업별)

(단위 : 천원)

구분	관	항	2023년(안)	2022년	전년(증△감)	증감률
총계			8,431,227	7,439,791	991,436	13%
1. 재단자체사업			7,727,341	7,234,291	493,050	7%
		대외협력(정책실)	202,434	158,914	43,520	27%
		정책실 운영	87,434	78,914	8,520	11%
		패션영화제	115,000	80,000	35,000	44%
		경영지원팀	4,462,017	3,973,426	488,591	12%
		인건비	3,277,634	2,733,473	544,161	20%
		퇴직급여충당금	273,530	232,832	40,698	17%
		일반운영비	910,853	1,007,121	△96,268	△10%
		지역문화진흥사업(문화사업팀)	591,553	561,691	29,862	5%
		문화사업운영경비	12,753	12,475	278	2%
		금천하모니축제	184,000	185,000	△1,000	△1%
		우리동네오페스트라	50,000	50,000	0	0%
		지역특성화문화예술사업	20,000	30,000	△10,000	△33%
		어울샘	124,800	99,600	25,200	25%
		금천아트테라피(예술로돌봄)	20,000	20,000	0	0%
		금천커뮤니티센터	160,000	164,616	△4,616	△3%
		기초단위 문화예술교육 거점 구축	20,000	0	20,000	-
		예술진흥사업(예술진흥팀)	1,062,232	1,191,136	△128,904	△11%
		예술진흥 운영경비	46,243	40,506	5,737	14%
		금나래아트홀 시설운영	113,020	59,260	53,760	91%
		금나래아트홀 공연전시	498,913	463,888	35,025	8%
		뮤지컬스쿨	294,056	492,482	△198,426	△40%
		문화통장(예술가)	0	45,000	△45,000	△100%
		금천가족공연예술축제	80,000	30,000	50,000	167%
		금천예술공연창작소	0	30,000	△30,000	△100%
		청년기반문화예술	30,000	30,000	0	0%
		독서문화진흥사업(도서관운영팀)	832,726	756,428	76,298	10%
		독서문화 운영경비	551,142	529,735	21,407	4%
		개관연장사업비	73,853	69,169	4,684	7%

구분	관	항	2023년(안)	2022년	전년(증△감)	증감률
		북페스티벌	21,000	21,000	0	0%
		작은도서관	157,522	108,455	49,067	45%
		스마트도서관	29,209	28,069	1,140	4%
		독서문화진흥사업(독산도서관)	194,444	181,573	12,871	7%
		독산도서관 시설운영	156,844	140,973	15,871	11%
		독산 문화 프로그램	20,000	20,000	0	0%
		독산 한 책 독후감 공모전	5,000	0	5,000	-
		독산 특화사업	10,000	10,000	0	0%
		독산 북스타트사업	2,600	5,600	△3,000	△54%
		초등특수학급독서교육	0	5,000	△5,000	△100%
		독서문화진흥사업(가산도서관)	143,070	156,691	△13,621	△9%
		가산도서관 시설운영	107,470	118,091	△10,621	△9%
		가산 문화 프로그램	20,000	20,000	0	0%
		가산 특화사업	10,000	10,000	0	0%
		가산 북스타트사업	2,600	5,600	△3,000	△54%
		가산 헬로우코딩 사업	3,000	3,000	0	0%
		독서문화진흥사업(금나래도서관)	83,939	91,355	△7,416	△8%
		금나래도서관 시설운영	41,339	45,755	△4,416	△10%
		금나래 문화 프로그램	20,000	20,000	0	0%
		금나래 특화사업	10,000	10,000	0	0%
		책꾸러미지원사업	10,000	10,000	0	0%
		금나래 북스타트	2,600	5,600	△3,000	△54%
		독서문화진흥사업(시흥도서관)	154,926	163,077	△8,151	△5%
		시흥도서관 시설운영	102,326	107,477	△5,151	△5%
		시흥 문화 프로그램	20,000	20,000	0	0%
		꿈꿈 프로젝트	20,000	20,000	0	0%
		시흥 특화사업	10,000	10,000	0	0%
		시흥 북스타트	2,600	5,600	△3,000	△54%
2. 보조금 및 기부금 사업비			703,886	205,500	498,386	
		보조금사업	636,886	205,500	431,386	
		보조금사업	636,886	205,500	431,386	
		기부금사업	67,000	0	67,000	
		기부금 사업	67,000	0	67,000	

관계법령

【지방재정법】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【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】

제20조(재정지원)

-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(해산)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·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.
- ③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·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【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】

제12조(운영재원)

-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, 재단 사업 수익금,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